



**살충소독**

기간 : 4월 ~ 10월

대상 : 인구밀집지역, 쓰레기장, 하천변, 공원 등

방법 :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우거진 풀숲, 하수구 등은 연막소독 실시(주 2회 이상)

영암읍 : 보건소 방역코스에 따라 방역소독 실시

영암읍 외 읍면: 각 읍면사무소 관할 지역 자체 방역 소독 실시

**유충구제**

기간 : 연중실시

대상 : 하수처리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, 개인하수처리시설), 습지, 고인물 등

방법 : 유충조사 후 유충구제제 살포 및 고인물 제거

※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( 집 주변 페타이어, 빈강통, 페트병, 화분 받침대 등) 제거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

**소독의무 대상시설**

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	소독횟수	
	4월 ~ 9월	10월 ~ 3월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(이하 "식품접객업소"라 한다)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 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5.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	1회 이상 / 1개월	1회 이상 / 2개월
6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6의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7의2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9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10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	1회 이상 / 2개월	1회 이상 / 3개월
13.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	1회 이상 / 3개월	1회 이상 / 6개월